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340
----------	-----

제안연월일 : 2024. 9.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19년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후, 정부 정책 및 평창군 도시 구조 여건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방향과 활성화지역을 재설정하는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계획의 범위

- 공간범위 : 평창군 5개 읍·면 도시지역(면적 : 16.97km²)
- 기준연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28년

2) 주요 내용

-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설정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생권역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우선순위 지정
 - 구역확대 3개소, 기정유지 2개소, 신규지정 1개소
- ※ 세부내용 「붙임」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참조

3.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용역 착수 : 2023. 11. 15
- 관련부서 의견조회 : 2024. 8. 8. ~ 8. 19
- 군의회 의견청취 : 2024. 10.
- 주민공청회 : 2024. 10.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신청 : 2024. 11.
 - 도 관련부서 협의,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승인고시 등

관계법령 발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중략

③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